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 2021. 4. 29.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 제 목 : 4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

---

우리 재판소에서 2021. 4. 29.(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 4. 29.(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6건. 끝.

# 보 도 자 료

##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은애의 적법요건에 관한 반대의견과, 위 조항이 의회유보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본안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다.



2021. 4.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 사용자로서, 한국전력공사가 2016. 7. 3.부터 같은 해 8. 2.까지 제청신청인이 사용한 525kWh의 전기에 대해 12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자,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중 누진요금에 관한 부분이 전기사업법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고 제청신청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 채무는 68,6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제청법원’이라 한다)은 제청신청인이 위 소송 계속 중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그 중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2017. 7. 2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 [심판대상조항]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관련조항]

전기사업법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3호로 개정된 것)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된 것)
-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2014. 5.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
- 제11조(요금체계) ①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 □ 결정주문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이유의 요지

###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제청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이하 ‘전기요금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을 전기요금약관이 효력을 갖게 되는 근거 조항으로 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약관을 근거로 제청신청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전기요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제청법원의 법률해석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인 경우에 전기요금약관 중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관한 부분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약관으로는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

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은 개인의 생존은 물론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된 규범체계의 마련을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조 제15호, 제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제14조) 전기판매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게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일반 수요자 사이에 전기요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관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여 정부가 전기요금약관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제16조 제1항),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전기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전기의 사용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조세 내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즉, 전기의 공급 대가인 전기요금의 부과 그 자체로 전기사용자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전기요금의 결정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 전기사업의 위험도나 물가상승률, 재투자계획이나 시설확장계획,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약관의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전기요금약관의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력의 수급상태, 물가수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도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6조 제1항),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등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법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하위법령에서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전기사용자의 보호, 물가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허용된 최대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산정 원칙이나 산정 방법을 정할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또한 전기사업법 및 물가안정법은 전기요금약관의 인가 절

차 내지 공공요금의 협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적법요건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 당해사건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약관 중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에 관한 부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제청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위 약관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요금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기요금약관은 전기사업자와 그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에 해당하고, 약관의 해석과 효력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관계(私法關係)에 속하므로 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의 문제는 사법적(私法的) 규율과 해석원칙에 따라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 본안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영역에서 국가는 사인인 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보장하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향점을 제시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사인인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는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크다.

- 입법자로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기본요소로서 전기요금의 산정에 관한 전기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의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도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제청법원이 문제 삼고 있는 누진요금 등의 요금체계는 전력산업의 효율적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 내지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음에 따라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및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서 정해지게 되었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전기는 개인의 생존은 물론 국가의 산업·교육·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전기의 공급은 전형적인 생존배려행정의 영역이라 할 것이나,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판매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대규모 자금의 투입을 요하는 전기사업의 특성상 실제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바, 그 범위 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국가의 생존배려행정을 대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없도록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게 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요금약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함으로써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하여 정부가 사전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소비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경제주체로서, 전기의 공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정 수준에서 회수할 수 있을 때에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력의 실제 수급상황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 결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전기요금의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 등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가 직접 결정하여야 할 정도로 전기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공급에 있어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통하여 전력수급상황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회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보 도 자 료

##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2018헌바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1. 4.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4. 14.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승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유상운송 제공의 예외적 허용사유 중 하나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규정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주요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 결정주문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자가용승용차를 통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운전자와 이용하는 동승자가 모두 출근 또는 퇴근 중일 것을 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1990년대 초 대도시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개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배경으로 입법되었다. 이때 입법자는 지역·시간대·이용자 등이 비교적 한정됨으로써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갖는 전형적인 출퇴근 카풀 개념을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기존의 유상 여객운송 사업과 달리 출퇴근 카풀에 대해서는 영업 내용, 안전 조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어떠한 추가 규제도 두지 않았다.
- 그런데 2013년 국내 유상운송 시장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되고 플랫폼운송산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출퇴근 카풀이 수익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유상 여객운송을 엄격하게 규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법 제1조)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율 체계

를 고려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취지가 광범위한 형태의 출퇴근 카풀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 이는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 8. 27. 심판대상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카풀 허용 시간대를 합의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승용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카풀에 한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의 배경 및 취지, 법의 규율 체계 등을 고려한다면 수범자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 보 도 자 료

##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2019헌바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마약류관리법상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1. 4.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8.5g<sup>1)</sup>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6개를 보관하여 약 14,625,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4.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등을 적용받아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1) 통상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위 필로폰은 약 1950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함.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결정주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이유의 요지

###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소지한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액’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가액’의 의미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 대법원도 일찍부터 마약류의 가액이란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통상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가액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오고 있다.
- 다만, 마약류는 거래금지품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상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검찰에서 매월 발행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마약류의 시장가격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러한 자료 등을 기초로 마약류의 가액을 충분히 산정해 낼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가액’에 관해서는 법원의 가액 인정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있을 뿐,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입법자가 마약류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각 마약류의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거나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범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 위배 여부(소극)

- 마약류는 환각을 일으키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어서 국민 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가하는 위해가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인바, 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유통 및 확산에 작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마약범죄 중 마약류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이하 ‘매매소지’라 한다)는 매도행위로 이어져 마약류의 공급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 및 판매조직을 확대시키고 마약류의 확산을 촉진하여 결국 공중의 건강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그 외 소유, 사용, 관리, 제공 등을 위해 소지하는 행위(이하 ‘단순소지’라 한다)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소지하고 있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량의 마약류 소지는 마약류시장의 특성상 다시 유통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설령 애초의 목적이 단순 소비만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언젠지 집단투약의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매매소지뿐 아니라 단순소지라 하더라도 대량의 소지행위는 마약의 대량 확산에 크게 작용하고 타인의 정신적·육체적 황폐화를 통해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가중된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관의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한편, 마약범죄는 유통되는 마약류의 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을 보이는바 마약류 가액은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마약류의 ‘수량’으로 삼는 방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1회 투약량이 모두 다르고, 마약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다 신종 마약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할 수 있어 이를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 삼지 않은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평등원칙 위배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마약류관리법과 달리 마약 및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나목 및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별 없이 가액만을 기준으로 그 단순소지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대량의 소지행위인 경우 유통의 가능성을 높여 마약류의 대량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행위유형이 갖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면 마약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 불법성을 동일하게 높게 평가하여 법정형에 반영하는 입법적 기초가 불합리하다 보기 어렵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단순소지죄의 법정형을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단순소지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마약류관리법 조항에 관한 선례에서는 단순 사용 목적의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쟁점이 된 경우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모두 있었으나(헌재 2019. 2. 28. 2016헌바382; 헌재 2019. 2. 28. 2017헌바229),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마약류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하였다.

# 보 도 자 료

##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2019헌바444등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1. 4. 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하 되, 국가 등은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제63조 중 ‘학교교지’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1. 4.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포항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및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용지로 환지처분 공고된 포항시 남구 ☞☞ 등 각 학교용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 이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위 조합들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각 학교용지에 대하여 매도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경상북도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위 토지들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항소심 내지 상고심 계속 중 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정리사업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이하 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귀속조항’이라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유상조항’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 ■ 결정주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이유의 요지

### ● 심판대상조항의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배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공공용지의 귀속은 사업주체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하는 수용이 아니라 공공용지의 소유관계를 정하여 사업주체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속조항에 따른 학교교지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조항이 수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 귀속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학교교지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 것은 국가 등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적기에 적절한 학교교지를 확보하여 공공시설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학교교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하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 학교교지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국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교지 취득의 대가로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 등에게 학교교지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사업계획의 단계에서 학교교지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미리 계획되고 협의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 국가 등이 학교교지를 취득함으로써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감보)은 효용이 상승된 환지로 인하여 이미 보상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속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또한 귀속조항은 국가 등이 적기에 학교교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이를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 실현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러한 공익은 대가 지급과 관계없이 학교교지의 귀속시기를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로 정함으로써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귀속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 유상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유상조항은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학교교지의 대가산정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감보율의 증가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학교교지를 유상으로 취득하게 한 입법취지 및 감보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은 환지된 토지의 효용의 증가로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지 대가산정의 기준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용이 발생하기 전, 즉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으로 봄이 상당하고, 국가는 적기에 적절한 학교교지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를 고려하여 학교교지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교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비용 역시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 이처럼 유상조항의 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과 본질 등에 비추어 학교교지 취득대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 전 토지가격에 학교교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유상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보 도 자 료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2019헌마20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중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을 준용하는 부분이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2021. 4.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공공택지 내 임대의무기간 10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다.
-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부령으로 재위임한다. 재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은 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상한만을 규정), ②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산정방법과 상한을 모두 규정) 규정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달리 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중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영 제23조 제8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12. 5. 국토교통부령 제4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 영 제13조 제5항 및 제23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 구 임대주택법령상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10년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은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5년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위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여 당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하여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므로,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 위 차이는 장기간 임대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게 되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과 연결된다.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전자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심판대상조항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상한만을 정하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분양전환 당시의 객관적 주택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임차인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임대 의무기간의 장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평등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구 임대주택법령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령은 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와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에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2019헌마202 사건), ②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

준은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2020헌마923 사건).

- 이 결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위 임대주택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2020헌마923 사건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것이 위 임대주택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하였다.

# 보 도 자 료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2020헌마9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7항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이 임차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2021. 4.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공공택지 내 임대 의무기간 10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이고, 청구인들은 LH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부령으로 재위임한다. 재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규정한다.
- 이에 청구인들은 '대통령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청구인들은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7항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⑦ 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조항]

####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소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정부 지원이 있으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5·6분위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중·대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자력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7분위 이상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각각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이에 중·대형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자율화되어 있고,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양전환가격도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되어있다. 소형임대주택과 중·대형임대주택은 다른 소득계층의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위와 같은 차이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과 연결된다.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택지 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에 있어 중·대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 비하여 많은 공적 지원을 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이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것은 중·대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사적 영역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소형임대주택과 동일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형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임차인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중·대형임대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차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중·대형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중·대형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 □ 결정의 의의

- 구 임대주택법령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령은 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에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2019헌마202 사건), ②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2020헌마923 사건).
- 이 결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것이 위 임대주택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2019헌마202 사건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위 임대주택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하였다.